

변호사시험 출제대상 부속 법령

1. 개요

(1) 변호사시험 시험과목

○ 필수과목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선택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2) 출제대상 부속법령

○ 2009. 4. 변호사시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법무부는 2009. 5.부터 2010. 10.까지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 T/F 및 각 과목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음

○ 필수과목의 경우 2010. 3.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한 변호사시험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각 문제유형 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부속 법령(다음 항목에 열거된 법령과 같음) 및 기타 필수과목 해당 법률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령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을 출제할 예정임

○ 선택과목의 경우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2] 출제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음

2. 필수과목 출제대상 부속법령

(1) 공법

○ 헌법부속법령

- 국적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모자보건법, 형사소송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계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족전염병예방법,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청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사면법, 감사원법,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행정법 각론 법령 전범위

- 지방자치법 등 강학상 행정법 각론 해당 법령

(2) 민사법

○ 민사특별법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원보증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자제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민법·민소법 관련 부분에 포함)

(3) 형사법

○ 형사특별법 등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정수표 단속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변호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규칙